

『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2년 10월 11일

나. 발 의 자 : 장미경, 김민성, 김원섭, 김정도, 박교상, 박세채,
이상호, 이정희 의원(8인)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10월 19일

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장 미 경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중앙부처의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염병 등의 재해·재난 시대에 발맞춘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
- 구미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“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”의 설치·위탁 근거 마련

다. 주요내용

-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사업 내용 개정(안 제3조)
-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 확대(안 제4조)
-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한도 상향(안 제5조)
- 특례보증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신설(안 제6조)
-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내용 개정(안 제8조)
-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근거 신설(안 제10조, 제11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~제12조, 제24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2. 10. 12. ~ 10. 17.)결과 의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용 덕

- 본 「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은,
 -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한도 상향,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,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둘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,
 - 특례보증 지원 시 낮은 신용도 등 담보 능력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을 수

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조례 개정으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